#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



[시행 2022. 12. 1.] [대통령령 제33005호, 2022. 11. 29., 타법개정]

소방청 (위험물안전과) 044-205-7482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5. 26.>
- 제2조(위험물)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"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. <개정 2005. 5. 26.>
- **제3조(위험물의 지정수량)**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"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 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.
- **제4조(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)**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.
- **제5조(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)**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.

####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

- 제6조(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)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2. 15., 2017. 7. 26.>
  - ②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 5. 26., 2007. 11. 30., 2008. 12. 3., 2008. 12. 17., 2013. 2. 5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7. 14.>
  - 1. 제조소등의 위치・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
  - 2.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
  - 3.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. 다만,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.
    - 가.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: 구조・설비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옥외탱크저장소(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: 위험물탱크의 기초·지반,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
  -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07. 11. 30., 2008. 12. 3.>
- 제7조(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)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·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- 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,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 5. 25.>
- **제8조(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)**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8. 1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2. 15., 2017. 7. 26., 2019. 12. 24., 2021. 10. 19.>
  - 1. 기초・지반검사 :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
  - 2. 충수(充水)·수압검사: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.
    - 가,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
    - 나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
    - 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
    - 라. 삭제 < 2006. 5. 25.>
  - 3. 용접부검사: 제1호에 따른 탱크. 다만,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(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)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.
  - 4. 암반탱크검사: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
  -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·지반검사, 충수·수압검사,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,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.<개정 2021. 10. 19.>
- 제9조(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)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 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·수압검사로 한다.
  -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・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(이하 "탱크시험자"라 한다)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・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전(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)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이하 "탱크시험합격확인증"이라 한다)를 시・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08. 12. 3., 2021. 1. 5.>
  - ③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·수압검사를 면제한다.<개정 2021. 1. 5.>
- 제10조(완공검사의 신청 등)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,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(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)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.<개정 2021. 1. 5.>
  - ③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·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21. 1. 5.>
  -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 1. 5.>
  - ⑤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 1. 5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#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

- 제11조(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)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"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.
  -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05. 5. 26., 2013. 2. 5., 2014. 12. 9., 2017. 1. 26., 2022. 11. 29.>
  - 1. 제조소등에서 저장・취급하는 위험물이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
  - 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·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
  -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개정 2005. 5. 26., 2011. 10. 28., 2013. 2. 5., 2014. 12. 9., 2015. 12. 15., 2017. 1. 26., 2022. 11. 29.>
  - 1. 제2항제1호의 경우 :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
  - 2. 제2항제2호의 경우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 또는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(이하 "안전관리자"라 한다)의 자격이 있는 자
- **제12조(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)**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8. 1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2. 15., 2017. 7. 26.>
  - 1. 보일러 ·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[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(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. 이하 제2호에서 같다]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  - 2.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[일반취급소간의 거리(보행 거리를 말한다.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)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]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 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  - 3.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,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  - 4.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    - 가.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
    - 나.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. 다만,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5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 인이 설치한 경우
  -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.<개정 2005. 5. 26., 2006. 5. 25., 2015. 12. 15.>
  - 1. 제조소
  - 2. 이송취급소
  - 3. 일반취급소. 다만,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.
    - 가.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
    - 나.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3조(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)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15. 12. 15.>
- 제14조(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)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.
  -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1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.<신설 2011. 12. 13.>
  - 1.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
  - 2.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3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- **제15조(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)** 법 제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5. 25.>
  - 1.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
  - 2.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
  - 3.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
  - 4.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
  - 5. 암반탱크저장소
  - 6. 이송취급소
  - 7.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. 다만, 제4류 위험물(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)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(제1석유류·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)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.
    - 가. 보일러・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
    - 나.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
- **제16조(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)** 법 제1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.
  - 1.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  - 2. 지하탱크저장소
  - 3. 이동탱크저장소
  - 4.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・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
- 제17조(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) 법 제1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"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. <개정 2017. 12. 29., 2021. 10. 19.>

## 제4장 자체소방대

- 제18조(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) ① 법 제19조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. <개정 2020. 7. 14.>
  - 1.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. 다만,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.
  - 2.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
  - ② 법 제19조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.<개정 2020. 7. 14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의 3천배 이상
- 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.<개정 2008. 1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## 제5장 위험물의 운송

제19조(운송책임자의 감독·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) 법 제2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.

- 1. 알킬알루미늄
- 2. 알킬리튬
-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

###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<신설 2020. 7. 14.>

- 제19조의2(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 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개정 2021. 6. 8.>
  - 1. 소속 소방공무원
  - 2.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3. 「소방기본법」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(이하 "안전원"이라 한다)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4.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·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
  -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7. 14.]

### 제6장 보칙

**제20조(안전교육대상자)** 법 제2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 6. 8.>

- 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
- 2.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
- 3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
- 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1조(권한의 위임) 시 •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동일한

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. <개정 2008.

- 12. 3., 2021. 6. 8., 2021. 10. 19.>
- 1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
- 2.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・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
- 3.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·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
- 4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(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)
- 5.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(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)
- 6.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
- 7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
- 7의2.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
- 7의3.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
- 8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
- 9.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
- 10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・반려 및 변경명령
- 11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

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.

- 1. 제20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: 안전원
- 2.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: 기술원
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.
- 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
  - 가.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
  - 나. 암반탱크
  - 다.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
- 2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
  - 가.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(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)에 따른 완공검사
  - 나. 옥외탱크저장소(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
- 3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
-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. [전문개정 2021. 6. 8.]

제2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소방청장(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- 1.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
- 6.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
- 7.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
- 9.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・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・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
- 11.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4. 8. 6.]

[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<2014. 8. 6.>]

제22조의3 삭제 <2016. 12. 30.>

제23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17.]

**부칙** <제33005호,2022. 11. 29.>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제1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2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2항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"으로 한다.

9부터 ①까지 생략

제14조 생략